

# 호주 소비자데이터권리 제정의 시사점 -마이데이터 정책을 중심으로-

목 차			
1. 서론			01
2. 국내외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		03
3. 호주	'소비자데이터권리'	개요	06
4. 호주	'소비자데이터권리'	주요 내용	10
5. 호주	'소비자데이터권리'	제정의 시사점	15
6. 결론			18

이금노 연구위원 (arrows3@kca.go.kr)



### 1. 서론

- □ 디지털경제가 발전하면서 소비자정보1)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o '소비자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직접적인 규율 대상인 개인정보<sup>2)</sup>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생성하거나 관여하는 정보 중 사업자의 이해관계나 소비자권리에 유의미한 모든 정보를 의미함(이금노, 2019)
- o 특히, 온라인행태정보<sup>3)</sup>와 같이 대량으로 자동 생산 및 수집되는 소비자정보는 혁신 적 기술과 결합하여 다양한 사업모델의 출현과 발전을 견인하는 등 소비자정보는 디지털경제의 가치사슬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 □ 각 국은 디지털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소비자정보에 대한 사업자의 수집 및 분석·활용 범위와 내용을 규율하는 입법을 마련하고 있음
- o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국회에서 소위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 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8월 시행예정임
  - 유럽연합은 기술발전과 세계화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도전에 대응하고 정보 활용성을 높여 디지털경제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 이라함)'을 2018년 5월부터 시행

<sup>1)</sup> 데이터가 단순히 관찰 또는 측정하여 수집된 사실이나 값이고 이러한 데이터의 집합이 데이터베이스(data base)라면, 정보는 데이터 중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의미한다. 그리고 데이터로부터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이라고 칭한다(New 경제용어 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ld=78 0804&cid=42111&categoryld=42111, 2020.6.16. 최종접속). 다만, '데이터'와 '정보'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며, 본고에서도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지는 않았다.

<sup>2) 2020</sup>년 8월 시행 예정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①개인이 바로 식별되는 정보, ②비식별 정보에 다른 정보를 쉽게 결합(정보의 입수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개인이 식별 가능한 정보, ③가명정보(①,②의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추가 정보의 사용 및 결합 없이는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로 분류하고 있다(법 제2조).

<sup>3)</sup> 웹사이트 방문이력, 앱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성향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용 자 활동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맞춤형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이 없는 미국은 2020년 1월 캘리포니아 주에서 '소비자프라 이버시보호법(CCPA: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이 발효되었고, 연방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요구 대응을 논의 중(이규엽·업준현, 2020)
- 0 앞서 소개한 규범들은 신기술 환경에서 소비자정보의 산업적 이용활용성 제고와 소비자 프라이버시 강화 필요성 사이에서의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원활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입법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는 소비자 이용편익 측면에서도 긍정적
  - 반면, 소비자 신뢰와 기본권적인 자기결정권이 확보되지 않은 채 정보의 활용성만 강조된 법제화는 오히려 정보 제공의 유인을 낮추어 결국 활용성도 제한될 우려
- o 한편, 데이터권리를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같이 소비자 관점으로 입법을 추진한 사례도 있지만, GDPR이나 우리나라 '데이터3법' 개정안은 이러한 접근이 미흡함
  - 디지털경제에서 소비자정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정보 침해 예방이나 피해구제에 머무르지 않고 데이터 활용을 통한 소비자편익의 제고와 새로 운 기술 및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정보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필요
- □ 최근 호주에서 제정된 '소비자데이터권리'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는 소위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를 소비자권리에서 출발하여 법제화를 모색하였음
- o 2019년이 입법이 완료되어 2020년 7월에 금융(은행)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며, 향후 적용 영역이 확대할 예정임
- o 본고는 해당 법률의 제정 과정과 주요 내용 및 의의를 디지털경제, 특히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소비자 정보권리 확보 측면에서 살펴보고 시사점 등을 제시하고자 함

# 2. 국내외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

- □ 데이터 수집·활용 기술이 발전하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관심 과 정책 도입이 활발함
- o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정보이동권리에 근거하여 본인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요청하면,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은 요청자를 포함한 개인이나 해당 정보주체가 지정한 제3자에게 정보를 개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곽호경 외, 2020)
  - 미국 등에서 활발한 데이터 유통시장이 데이터 보유자인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 모델 이라면,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주도적인 역할 수행
- 0 일련의 마이데이터 구현과 데이터 개방을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가 마이데이터 산업 이며,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수임
- □ 마이데이터 정책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확대와 데이터 서비스 산업 활성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조성은 외, 2019)
- 0 대체적으로 유럽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있고 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 권리의 실현 차원에서 마이데이터를 접근하고 있어서 데이터의 시장 활용이나 유통 활성화 측면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함<sup>4)</sup>
- o 반면, 일본이나 미국 등은 정부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으며 기업 간 개 인데이터의 유통에 방점이 있음
  - 미국은 이미 민간의 데이터 유통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sup>4)</sup> 유럽연합은 GDPR에 시업자가 제공 받은 데이터의 제3자 전송을 정보제공 주체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하는 '정보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을 반영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 실현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였다. 사업자는 정보 제공시 활용성을 고려하여 구조화되어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그리고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제12조, 제20조 등).

정책의 마이데이터 추진

- 일본은 정부에서 출발하여 기업 특히, 대기업이 참여하는 정보은행 형태이며 개인의 직접적인 정보권리 실현보다는 제도와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의 대리 관리 초점
- □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제 아래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가 한계 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음
- o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일반법의 성격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상거래나 산업별 개인정보 관련 입법이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관리에 방점이 있고 데이터 의 활용 지원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
  - 구체적으로는 다수의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없고, 가명 또는 익명 정보의 범위도 불분명하며, 엄격한 동의기반의 정보 활용 요구로 정보 활용성이 낮다는 의견 등
- o 최근 데이터 3법의 개정은 데이터 기반 산업 육성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존 제도 하에서는 양질의 정보 기반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이라는 선순환이 어렵다는 산업계 요구 등이 반영된 결과임
- o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본인정보 활용 지원 사업(마이데이터)을 2018년에 2개 분야에 대해 시범 적용했고, 2019년 5월에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 발굴을 통한 실증사 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5개 분야 8개 과제를 선정하였음<sup>5)</sup>
  - 20대 국회에서 공공 및 민간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의 요구 시 이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최종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음<sup>6)</sup>

<sup>5) &#</sup>x27;진료이력부터 생활습관까지 마이데이터로 편리하게 건강관리, 에너지 마이데이터로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절감-과기정 통부, 의료·금융·에너지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8개 과제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9.5.17.).

<sup>6) 「</sup>국가정보화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변제일의원 대표발의, 2018.2.14.) 제43조 제5항에 이를 명시하여 발의되었으나, 2020.5.20. 의결된 최종 대안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 □ 최근 신용정보 등의 금융정보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정책이 본격 추 진되고 있으나, 소비자권익 증진 관점에서는 그 내용이 미흡함
- o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전단계로 제3자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개방 및 공유하는 오픈뱅킹이 2019년 12월 시행되었음
  - 제2금융권 등으로 적용 범위 확대, 오픈뱅킹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과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추진 중7)
- o 금년 8월 시행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신용정보 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반영함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sup>8)</sup>을 신설·정의하여 정보 전송요구권<sup>9)</sup>과 함께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업무 범위로 신용정보 통합관리, 맞춤형 상품 추천, 정보 권리의 대리행사, 투자자문·일임업, 금융상품자문업 등을 규정
- 0 그러나, 신용정보 분야의 마이데이터 도입은 정부주체의 권리 증진보다는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황현아, 2019)
  -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소비자의 정보 전송요구권을 명문화했지만, 정보주체의 권리 확보 보다는 소비자정보를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구현 및 확장하는 데 초점
  - 이는 개인정보이동권을 정보주체의 권리 확보 차원으로 반영한 GDPR과는 차이
- o 소비자의 정보통제를 강화하는 이동권이 개인정보보호나 소비자권리 일반법에 반영 되지 않고 신용정보 분야에 한정되어 반영된 것도 권리의 확장성에는 부정적임

<sup>7) &#</sup>x27;금융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 중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2.26.).

<sup>8)</sup>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된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개정안 제2조 9의2).

<sup>9)</sup> 전송요구권의 행사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계좌정보, 대출정보, 카드정보, 보험정보, 금융투자 상품 정보, 증권계좌정보, 연금상품정보, 보험대출정보 등이다(시행령(안) 별표5).

# 3. 호주 '소비자데이터권리' 개요10)

#### □ 제정 경과

- o 2017년 5월 호주 재무성(The Treasury) 소속의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가 새로운 경제 환경에 부합한 정보권리 창설의 필요성 제안
- o 2017년 7월에 재무성을 중심으로 호주에 가장 적합한 오픈 뱅킹(Open Banking) 모델을 논의한 끝에 11월26일 데이터에 대한 소비자권리를 보장하는 '소비자데 이터권리(Consumer Data Right, 이하 'CDR'이라함)'정책 도입 발표
- o 2018년 12월, 은행업 중심의 CDR 초안이 제시 되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의 최종안 마련
  - 소비자데이터권리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장치 및 데이터의 수집·보유· 공개·활용 등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 규정
- o 2019년 7월에 하원에 법안이 제출되었고 8월에 최종 의회를 통과하여 발효<sup>11)</sup>
- o 2019년 하반기 및 2020년 상반기에 법안 시행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추진

# □ 제정 목적

o CDR은 소비자가 정보 사업자(data holders)가 보유 중인 소비자 본인의 정보를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접근하며,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안전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데이터에 대한 소비자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임

<sup>10)</sup> 신유형기술 관련 개인정보 소비자권리 강화방안 연구(이금노, 2019) 및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CDR 홈페이지 자료 참고 (www.acc.gov.au/foucus-area/consumer-data-right-cdr-0, 2020.5.20. 최종접속).

<sup>11)</sup> 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Bills\_Legislation/Bills\_Search\_Results/Result/Pld=r6370(2020.5.15. 최종접속).

- 호주 정부는 데이터에 관한 소비자권리 법제화로 거래 관련 정보의 비교 및 전환 등이 용이하여 합리적 소비가 가능하고, 가격인하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시장의 창출과 같은 경쟁 촉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sup>12)</sup>
- o 호주 정부는 CDR 도입의 4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함<sup>13)</sup>
  - ①CDR의 도입은 '소비자를 위한(for the **C**onsumer)', '소비자에 관한(about the **C**omsumer)', '소비자 관점으로의 조망(**C**onsumer's perspective)'이 기본
  - ②소비자가 시장의 경쟁을 통해 선택권 등의 편익이 향상되도록 관련 재화와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
  - ③정보를 활용한 개인화된 서비스와 같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업들이 출현하고 성장하는 기회 창출에 기여
  - ④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추구, 곧 지속가능과 공정성을 위해 정보보안과 프라이버시 확보를 기반으로 하되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거나 많은 비용이 소 요되지 않도록 설계

### □ 적용 범위

- o 2년여에 걸친 6단계 사업을 2020년 2월부터 시행하여 금융(은행)업의 점진적인 적용 확대(Phased Approach)를 추진 중임
  - 주요 4대 은행은 2019년 7월에 신용 및 직불카드, 예금 및 거래 계좌 데이터를 공개했고, 2020년 2월부터는 주택담보나 일반대출 규모, 7월부터는 기타 데이터로 확대하여 본격적인 시행

<sup>12)</sup> CDR 시행으로 a)소비자의 실제 지출과 결제 패턴을 반영한 신용카드나 담보대출 비교 서비스, b)소비자의 모든 금융 상품 이용 현황 등의 종합 관리 및 지출 행태를 고려한 금융 관리 개선 지원 서비스, c)가계의 에너지 소비현황을 분석하여 태양 에너지로의 전환 유익 및 적정 시점 등 최적의 에너지 운영 방안 제공 서비스, d)실제 휴대폰 및 인터넷 데이터 사용에 기반하여 최적의 휴대폰이나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교 서비스 등의 소비자편의 예상(Consumer Data Right Overview, pp.2-3(2019. 9, https://treasury.gov.au/sites/default/files/2019-09/190904\_cdr\_booklet.pdf, 2020.5.20. 최종접속).

<sup>13)</sup> Consumer Data Right Overview, p.1.(2019. 9, https://treasury.gov.au/sites/default/files/2019-09/190904\_cdr\_booklet.pdf, 2020.5.2 0. 최종접속).

- 나머지 은행들은 2020년 7월 이후부터 2022년 7월까지 공개 데이터 범위를 순차 적으로 확대하여 오픈뱅킹 형태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예정<sup>14)</sup>
- o 2018년 5월 호주 정부는 에너지 분야 데이터의 CDR 적용 계획을 발표하는 등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며, 향후 통신 분야까지 확대적용이 예정되어 있음
  - 에너지 분야를 반영한 법안 초안이 2020년 5월 마련되어 의견을 수렴하였고, CDR에 포함되어 활용될 에너지 데이터로는 국가 단위의 에너지 정보, 개별 소비자 에너지 소비 정보(종류, 규모, 금액 등), 에너지 생산가능 정보 등<sup>15)</sup>
  - 적용 영역 확대 등의 결정은 소비자와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프라이 버시에 미치는 영향, 규율 측면의 효과, 지적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

### □ 집행 구조

- o CDR 도입 및 확대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은 재무성이 주도함
- o 재무성 소속 독립 위원회인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가 '정보위원회(OAIC: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의 도움을 받아 전체적인 법안 제정 권한과 집행을 총괄함
  - CDR 집행을 위한 기관 간 협업의 기본원칙으로 책임성, 효율성, 공정성, 비례성, 투명성 등이 제시됨<sup>16)</sup>
  - 경쟁소비자위원회는 데이터 공유에 활용되는 전반적인 시스템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역할도 수행

<sup>14)</sup>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규모 은행 등의 금융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www.accc.gov.au/media-release/temporary-exemptions-under-consumer-data-right, 2020.5.15 최종접속).

<sup>15)</sup> https://treasury.gov.au/consumer-data-right/energy-sector-consumer-data-right, 2020.5.20. 최종 접속).

<sup>16)</sup> ACCC/OAIC Compliance and Enforcement Policy for the Consumer Data Right(2020.5월).

-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1988) 등 개인정보보호 법령 전반을 관할하는 정보위원회는 개인이나 소상공인 소비자의 일반적인 프라이버시나 CDR 관련 프라이버시 세이 프가드(Privacy Safeguards) 적용 관할 및 관련된 불만 처리 등을 담당함
- o 또한,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내 Data61을 CDR을 지원하는 '데이터표준기구(DSB: Data Standards Body)'로 지정하여 데이터 공유 등을 위한 기술 표준 제정 등의 책임을 부여함

#### 〈유관 기관별 역할 및 책임 분담〉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정보위원회(OAIC)	데이터표준기구(DSB)
·재무성의 CDR 정책 적용 산업 지정에 대한 자문	·재무성에 CDR 도입·확대 정 책 중 프라이버시 관련 자문	·데이터 전송 및 데이터 포맷, 보안 등의 기술적
·사업자 책임 등의 규율 제	•경쟁소비자위원회가 제안하는	인 표준 마련
정(OAIC나 산업규율부서, 일반 대중의 의견 청취)	기준의 프라이버시 측면 자문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기준	*표준은 데이터 분야에 따 라 달리 규정되며, 관련
·정보 공유·활용 절차 및 관 련 사업자의 관리	설정 과정 참여	워킹그룹의 논의를 거쳐   제정
•관련 정책과 병행해 중대한,	·소비자 불만에 대한 일차적이 고 우선적인 접점 및 처리	
또는 계속적 CDR 위반 사 업자에 대한 규율 및 집행	*직접 처리 또는 관련된 외부 기관(ACCC 등)과 연계	

\*자료: Consumer Data Right Overview(호주 재무성 2019.9월, p.10)

# □ 법제화

- o CDR은 2010년에 제정된 '경쟁 및 소비자법(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의 개정(Treasury Laws Amendment 2018)으로 주요 내용을 법제화함
  - '경쟁 및 소비자법'의 Part IVC 이후 'Part IVD-Consumer data right'으로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7개의 Division으로 구성
- o 이외에도 정보위원회 관련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1988)' 및 '호주 정보보 호위원회법(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Act 2010)'도 일부 개정

# 4. 호주 '소비자데이터권리' 주요 내용17)

□ 아래에서는 오픈 뱅킹의 확대된 개념으로 마이데이터를 구현한 '경쟁 및 소비자법' 상의 CDR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봄

# 가 주요 이해 당사자

#### □ 소비자

- 0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활용 역량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인식 아래 소비자 중심의 규율 체계를 설계함
- o CDR 서비스에서의 소비자는 '개인'과 '소기업(small business)' 임
  - '개인'은 온라인으로 데이터 보유사업자에 접속 가능한 은행 계정이 개설된 18세 이상의 자연인이며, 폐쇄 계정이나 공동 명의 계정까지 범위 확대 계획
  - '소기업'은 프라이버시법에서의 정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 연도의 매출이 호주달러 3백만 이하인 기업을 의미

### □ 데이터 보유사업자

o CDR이 허용한 특정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으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사전 소비자가 동의한 인증된 제3의 데이터 사업자나 소비자 자신에게 일정 기간 내에데이터를 공유(제공)할 의무를 부담함

<sup>17)</sup> CDR interagency FAQs 참조(2020.3., www.acc.gov.au/foucus-area/consumer-data-right-cdr-0/cdr-interagency-faqs, 2020.5.20. 최종전속).

o 최초 4개의 주요 은행을 시작으로 향후 호주 내에서의 은행업이 인가된 대부분 의 저축 금융기관과 일부를 제외한 해외 저축 금융기관까지 확대될 예정임

#### □ 데이터 서비스사업자

- 0 소비자가 지정한 데이터를 은행 등의 데이터 보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경쟁소비자위원회가 정한 일정 프라이버시와 보 안 요구 사항 등을 충족해야 함
- 프라이버시법은 소기업에 대해 여러 의무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나, CDR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기업에 대해 별도의 예외 불인정
- o CDR 체계에서 이들 기업의 수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최초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디바이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가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자신의 정보처리 흐름을 알고 통제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서비스 현황이나 소비자 동의에 의한 정보 공유 현황, 소비자 요구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consumer dashboard) 제공 의무 부담

# 나. 데이터의 공유

- □ 공유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 및 특징
- 0 공유 가능 데이터
  - (소비자 개인정보, Customer Provided Data) 이름 및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 재무 상황에 대한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이와 관련된 정보 등 고객이 은행에 직접 제공하는 정보

- (은행 계정 정보, Account Data) 계정의 수 및 이름, 계정 내용, 자동결제 등 소비자의 은행 계정에 등록된 사항 등
- (거래 정보, Transaction Data) 예금 및 인출, 송금 등의 거래일, 거래 상대방, 거래 규모 및 형태 등 거래와 관련된 세부 사항
- (상품 세부 정보, Product-specific Data) 종류 및 내용, 적용되는 수수료나 이자율, 약관 등 은행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 o 호주의 CDR은 유사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들과 비교할 때 정보 개방의 범위가 가 장 넓은 은행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평가됨(곽호경 외, 2020)
  - 은행의 개방 의무화 대상 범위에 지급결제와 송금서비스를 위한 실행형 API<sup>18)</sup> 는 제외하고 데이터의 조회 및 전송을 위한 조회형 API만으로 한정
- □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에 의한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보유 사업자는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 경쟁소비자위원회가 인가한 제3의 사업자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엄격한 동의는 동 법에 의 한 데이터의 수집과 관련된 데이터의 활용 모두에 적용되는 기본원칙임
  - 이는 '자발성(voluntary)', '목적의 특정(specific as to purpose)', '분명한 의사표시(express)', '기한설정(time limited)', '고지(informed)', '철회용 이성(easily withdrawn)' 등을 통해 소비자의 분명한 이해와 투명성이 담보되는 동의 확보가 목표
- 0 투명한 동의 절차의 확보를 위해 정보 공유 사업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sup>18)</sup> API(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을 의미하며, 금융업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는 API 및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하고 서비스 화면에 사용자가 직접 로그인하여 원하는 핀테크 기업 등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하면 해당 기업이 API를 통해 필요한 정보만 수신하는 표준 API가 선호되고 있다(곽호경 외, 2020).

- 관련 서비스 제공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기간을 정해 동의를 요청
- 동의 요청 시 다른 사안의 내용을 함께 묶어서 요청하는 행태 금지
- 동의 절차 중에 관련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거나 언급하는 것 금지
- 디폴트 설정 등에 유의하여 능동적인 소비자 동의 의사 표시 확인 등
- 0 소비자는 정보 공유 동의 시 수집되는 데이터의 종류나 특정된 활용목적, 수집 및 사용 기간(최대 12개월) 등을 선택하거나 인지할 수 있어야 함
  - 동의 요청은 간결하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시되어야 하며, 이때 시각적 요소 활용 가능
- □ 동의 철회권 등에 대한 분명한 고지 및 실행 의무
- 0 사업자는 소비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동의 단계에서 소비 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여기에는 동의의 철회 시 효과 등을 포함해야 함
- o 동의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데시보드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소비자는 언제라도 비식 별화(de-identification) 전까지는 자신의 데이터 삭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 구체적 정보제공 기준 등을 정한 사업자 가이드라인 제공 등
- o 안전하고 편리한 데이터의 제공 및 공유를 위해 온라인 상에서의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 및 소비자 인터페이스 기준을 제시하고 이의 사업자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o 데이터표준기구는 CDR에서 데이터를 보유하거나 공유 및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소비자 동의 및 철회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소비자 관점으로 실현(CX: Consumer Experience)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함19)

- o 가이드라인은 소비자가 충분한 사실 인지에 기초하여 동의 등의 의사표현과 필요한 정보 탐색이 가능하도록 증거기반(evidence-based)의 프로세스 구현을 제시함
-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CDR CX 표준 기본원칙은 ①소비자중심<sup>20)</sup>, ②다양한 환경과 여건아래 있는 소비자의 접근과 참여 보장, ③데이터 공유와 서비스에 관한 광범위 한 내용을 포괄하는 소비자경험 제공, ④중요 사항을 반영하면서도 소비자의 내용 이해와 조작 등이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구성, ⑤소비자 의사의 실시간 실현 가능 등

# 다. 보안 및 프라이버시 정책

- □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와 정보보안 확보
- 0 프라이버시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자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데이터 공유 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사전 요건 충족 필수
  - 소비자가 동의 또는 요구한 내용에 한해 데이터 공유 사업자에 제공
  -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통제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소비자 선택권 제공
  - 삭제 및 비식별화 데이터와 관련된 의무 부여, CDR 데이터 전송을 위한 표준 도입
  - CDR에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 받는 기업에 대한 프라이버시법 적용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적용
  - 분쟁조정 및 소송 등을 포함하여 프라이버시 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소비자 구제를 위한 구제 수단 반영

<sup>19) &#</sup>x27;Consumer Data Standard' (2020.4., https://consumerdatastandards.org.au/cx-standards/, 2020.5.20. 최종 접속).

<sup>20)</sup> CDR CX의 '소비자중심' 원칙은 CX가 직관적이고, 소비자 태도와 수요, 행동, 경험 등을 중심으로 설계되는 것으로 이는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원칙으로 설명하고 있다('Consumer Data Standard', p.14).

o 효과적인 프라이버시 및 보안 확보를 위해, 소비자정책 당국(ACCC)과 개인정보보호 당국(OAIC)이 CDR 시행에 대해 긴밀하게 협업함

#### □ 정보처리 방침의 작성 및 고지

o 데이터 보유 및 공유·활용 사업자는 소비자의 CDR 데이터 통제 방법과 불만처리 사항을 포함한 분쟁해결 절차 이용 방법 등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함

# 5. 호주 '데이터소비자권리' 제정의 시사점

- □ (도입 목적) 마이데이터 서비스 추진의 가장 우선적인 정책 목적을 소비자권리의 증진으로 설정
- o 호주의 CDR은 권리 도입 논의와 법제화의 과정에서 일차적인 제정 목적이 소비자권 리의 증진에 있음을 여러 단계에서 밝히고 있음
- 0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설계와 실행의 일차적인 목적은 소비자정보의 제공 주체인 소 비자의 권리 증진임
  - 소극적 측면의 소비자권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실행 중 소비자의 명시적 의사에 기반한 데이터 처리와 프라이버시 등의 소비자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것
  - 적극적으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설계와 실행이 소비자의 편익 등 경제적 측면의 개선과 권리 증진에 기억하는 것
- 0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소비자권리 보다는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설계 및 추 진될 경우 소비자 참여 유인이 낮아 서비스 활성화도 어려울 수 있음

- □ (범위)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소비자의 정보 통제에 기반한 서비스로 소비자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 적용 범위의 확대 추진 필요
- 0 호주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소비자의 일반권리로 설정하고 은행업을 시작으로 향후 에너지나 통신 분야 등으로 확대하는 타임라인을 설정하여 추진 중임
- o 반면, 우리나라는 신용정보업에 제한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적용 산업 및 일 정 등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0 이에, 개인정보보호나 소비자권익증진 법제에서 최근의 기술 및 서비스 환경에서 요구되는 정보이동권 등의 정보주체 권리를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로 주창하고 마 이데이터 서비스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입법의 검토 및 추진이 필요함
  - 다만, 이러한 서비스 확대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나 시장 환경의 발전과 성숙을 전제
- □ (규율 거버넌스) 소비자권익증진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산업을 규율하는 정책 기관의 긴밀한 협업 거버넌스 구축 필요
- 0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①정보주체이자 서비스 이용자인 소비자 관점, ②서비스 작동의 매개로서의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 관점, ③서비스를 제공하고 구현하는 산업적 관점이 함께 어우러질 때 효과적임
- o 호주는 소비자데이터권리의 서비스화를 위해 큰 그림의 설계는 재무성이 담당하고 실무적인 총괄은 소비자정책을 총괄하는 경쟁소비자위원회가 개인정보 및 보안 분야 에 대한 정보위원회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구조로 설계됨
  - 더불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핵심인 데이터의 호환 및 인터페이스 표준화 등은

별도 지원 기관을 통해 마련

- 0 이러한 호주의 정책 규율 거버넌스는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권리 정책을 추진하는 호주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소비자권리에 기초한 마이데이터 서 비스의 접근과 정책 설계를 통해 향후 다양한 산업으로의 확장이 용이
- 0 우리나라는 특정 산업이나 과학기술 진흥 정책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추 진되고 있고, 소비자정책 분야와의 충분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술 표준이나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특정 산업 중심으로 개발될 경우 다른 산업에서 생성되는 소비자 데이터와의 호환성이나 범용성이 제한되어 서비스 확장에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 □ (규율 원칙) 소비자의 행동 특성을 반영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설계로 실질적인 소비자의 정보통제권 확보
- 0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실질적인 소비자 정보통제권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 동의 과정의 전반과 서비스 내역을 확인하고 통제하는 인터페이스가 소비자 지향적 으로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함
- 0 호주는 데이터표준기구가 주축이 되어 소비자가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데이터 제 공 등에 동의하며, 쉽고 편리하게 자신이 제공한 데이터의 활용을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자 가이드로 제공하고 있음
  - 앞서 소개한 CDR CX 원칙과 같이, 관련 표준의 마련이나 사업자의 의무 부여 시소비자의 행동특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소비자 동의권을 확보하도록 규율
- o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시행을 위한 하위 법제 마련이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는 CDR에 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의 실질적인 소비자 정보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소비자 경험 경로에 기반한 세부 가이드 마련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o 개인정보 제공·활용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현행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적극적인 데이터 공유를 표방하는 마이데이터 서비 스와 관련된 기본 원칙과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상세히 마련되어야 함
  - 특히,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의 마련 시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소비자 개인정보 동의 가 맥락 의존적(context-dependent)인 행동의 결과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소비자 직 관적으로 설계될 필요(이금노, 2019)<sup>21)</sup>

# 6. 결론

- □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포함하여,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경제 규율 패 러다임 구축 추진
- o 정보 활용의 기술적·경제적 확장성이 증가하면서 간섭 받지 않을 권리인 '프라이 버시로'부터 출발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 특히 소비자의 개인정보 경제적 권리가 중요한 개인정보보호 이슈로 등장함(이금노, 2020)
  - 경제활동의 과정에서 데이터라는 디지털경제의 핵심자원의 생성자이면서 데이터로 응용·창출되는 서비스의 최종 구매자인 소비자를 중심으로 데이터경제의 권리가 다시 정의되고 정립될 필요
- 0 이에, 데이터경제에서의 사업모델과 사업자에 대한 규율도 소비자라는 경제주체의 권 리와 행동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하여 규율되어야 함

<sup>21)</sup> 소비자는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이를 강화하는 정책을 지지하지만 현실에서는 개인정보 동의·제공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신중하지 않은 역설적 행동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나, 이는 의사결정에서 비대칭정보나 합리성 제한 등의 장애물로 인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거나, 굳이 합리적인 판단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맥락에 충실한 합리적 의사 결정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 □ 현행 신용정보업 중심의 국내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은 구체적인 내용과 소비자편익 증진의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
- 0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비자정보가 서비스를 통해 활용되고 산업화되는 사업모델로 적절한 제도적인 설계가 뒷받침 된다면 실질적인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과 경제적 이 익에 기여할 수 있음
  - 이에, 우리나라의 「신용정보법」 개정과 관련 정책 추진의 이유에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편익의 증진이라는 표면적 목적을 부각하여 제시
- 0 그러나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정책은 소비자권익 증진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은 바, 향후 정책 방향 설정과 세부 정책 마련 시 적절한 반영이 필요함
  - 대표적으로 현행 법령은 유럽 등의 사례와 비교할 때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사업 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용정보 분야에 매우 제한적으로 도입
  - 또한, 소비자 행동 특성을 고려한 촘촘한 정책 설계로 소비자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통제를 지원하기 보다는 서비스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이나 거시적인 4차 산업 혁명의 대응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활용 필요성과 당위성에 많은 설명을 할애
- □ 이에, 국내 데이터 관련 정책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소비자권익을 중심으로 법제화한 호주의 데이터소비자권리를 참고하여 데이터 경제에서의 소비자권리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및참고사이트]

- 곽호경·조민주·최연경·김규림(2020), '데이터 경제의 시작, 마이데이터 : 금융 산업을 중심으로', Vol.68(통권 제68호).
- 이규엽·엄준현(2020), '미국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동향: 국내 개정법과의 비교 및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20 No.3.
- 이금노(2019), '신유형기술 관련 개인정보 소비자권리 강화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 19-02.
- 이금노(2020), '디지털 소비자의 편익·비용 이슈와 시사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 향 제102호.
- 조성은·정원준·이시직·이창범·박규상(2019), '개인주도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본연구 19-01.
- 황현아(2019), '마이데이터 산업의 내용과 과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KRI 리 포트 2019.4.22.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 호주 연방 법령정보 홈페이지(https://www.legislation.gov.au/)
- 호주 재무성 CDR 홈페이지(https://treasury.gov.au/consumer-data-right)
-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CDR 홈페이지(www.accc.gov.au/focus-areas/consumer-data-right-cdr-0)
- 호주 소비자데이터 표준 홈페이지(https://consumerdatastandards.org.au/)

본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